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허가·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처리능력 이내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소각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제2호다목6)에 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차) 해당시설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면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처리능력 이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인·허가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

는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